

10. 신수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 및 지적승인

서울특별시고시제 1998-350호 1998. 10. 10

주요내용

가. 재개발사업의 명칭 : 신수주택재개발사업

나. 재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위치 : 서울 마포구 신수동 91번지 일대
- 면적 : 9,704㎡

다. 토지이용계획

구분	명칭	면적 (㎡)	비율 (%)	비고
택지 및 공공시설	계	9,704	100	
	택지	8,480	87.4	
	공공시설			
	소계	1,224	12.6	
	공공공지	80.0	0.8	
	도로	1,144	11.8	

라.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

(1) 도로결정조서

구분	등급	유별	번호	폭원 (m)	연장 (m)	사용형태	기능	시 점	종 점
기정	중로	2	1	15	59	일반도로	집산도로	신수동 177-16	신수동 91-535
신설	소로	3	1	6	76	"	국지도로	신수동 139-1	신수동 91-178
"	"	3	2	4	51	"	"	신수동 180-3	신수동 177-18
"	"	3	3	4	26	"	"	신수동 91-233	신수동 91-249

(2)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조서

결정구분	시설의종류	위치	면적(m ²)	비고
신설	공공공지	마포구 신수동 145-1	80	

마. 건축시설계획결정조서

구분	획 지		건축 구분	건폐율	용적율	층수(높이)	건축시설 주된용도
	구분	면적 (m ²)					
신설	택지	8,480	신축	25%이하	220%이하	15층(51.4m) 이하	공동주택(조합원 및 분양 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바. 주택의 규모별 비율

- 전용면적 60m²이하는 전체 건립 주택수의 50%이상
- 전용면적 85m²이하는 전체 건립 주택수의 80%이상

사. 사업시행예정시기 :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

아. 관계도면 : 생략(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재개발과(3707-8235~6) 및 마포구 재개발과(330-2620~3)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).